

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기준

◎ 운영과정

구분	표준 현장실습학기제	자율 현장실습학기제
교육시간 배정 및 운영	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0이상 25 이하 (직무중심)	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25 초과 (교육중심)
현장실습 지급 의무화	교육시간을 고려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의 75/100이상의 실습지원비지급	유급을 원칙으로 하되,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무급 운영 허용
실습지원비 지급액	월 1,617,660원 이상 (26년 최저임금액 월 2,156,880원 기준 75%)	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지급
운영기간 및 시간	실습기관의 전일제를 기반으로 1일 8시간 기준으로 운영	표준형 현장실습 운영 범위에서 학교-실습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 <u>단, 무급 현장실습일 경우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으로 운영되어야 하며, 기간은 2개월 이하로 실시하여야 함</u>
보험가입 유무	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	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
정보공시 연계 여부	대학정보공시대상 (재정지원사업 평가 등에 활용)	대학정보공시대상 아님 (단, 실태조사는 실시)
관련서식 및 기타사항	교육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서식 준용 및 운영	필요한 사항 및 기준 등은 학교별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

※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교육시간(비율)에 대한 별도의 증빙(직무 교육 계획서)이 제출되어야 함

◎ 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

1. 별도의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실습형태(예: 사회복지현장실습, 영양사현장실습, 보육실습, 교육실습, 간호실습 등)
2.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,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·선발하는 경우
3.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(조기취업 포함), 근로, 인턴,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,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
4.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(예: 청년취업 아카데미, 000교육원 교육과정 등)
5. 해당 전공과의 연관성이 없는 현장실습
6. (교육부)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4조제4항·제5항의 수업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
7. (교육부)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18조제2항.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
8. (교육부)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2조, 제25조제3항에 따른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
9. (교육부)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5조제4항에 따른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
10. 현장실습 운영 확인이 불분명한 실습기관(예: 재택근무, 프리랜스직, 가족 경영업체 등)

현장실습학기제 운영절차



현장실습지원비 지급 기준

구분	용어 정의
실습지원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금전적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, 현물(식사, 기숙사, 통근버스 등)로 제공되는 사항은 실습지원비에 포함되지 않음
교육시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현장실습학기제 실시에 따른 실습기관의 현장교육담당자가 본인의 업무(시간) 중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투입하는 직무 관련 교육측면의 시간 - 1일 8시간이라는 현행 일반적인 근로여건을 기준으로 교육시간 비율을 고려할 경우 25%는 2시간에 해당함
주 단위 실습시간 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48시간 - (일 실습시간 수 × 주 실습일수 + 1 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) 값
월 단위 실습시간 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9시간 - (주 단위 실습시간 수 ÷ 7) × (365 ÷ 12)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

※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 적용 (시간급 10,320원, 월 환산액 2,156,880원)

◎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지원비 산출식 ※ 최소 10% 이상 최대 25% 이하의 교육시간 배정

예시: 1일 8시간, 주 5일, 교육시간 25%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우의 실습지원비

▶ 주 단위 실습지원비

- (주 단위 실습시간 ×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× 당해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)

⇒ $48\text{시간} \times 0.25 \times 10,320\text{원} = 1,238,400\text{원/주}$

▶ 월 단위 실습지원비

- (월 단위 실습시간 ×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× 당해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)

⇒ $209\text{시간} \times 0.25 \times 10,320\text{원} = 5,381,400\text{원/월}$

◎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지원비 산출식 ※ 교육시간 비율이 50%인 경우

예시: 1일 8시간, 주 5일, 교육시간 50%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우의 실습지원비

▶ 주 단위 실습지원비

- (주 단위 실습시간 ×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× 당해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)

⇒ $48\text{시간} \times 0.5 \times 10,320\text{원} = 2,476,800\text{원/주}$

▶ 월 단위 실습지원비

- (월 단위 실습시간 ×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× 당해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)

⇒ $209\text{시간} \times 0.5 \times 10,320\text{원} = 1,078,440\text{원/월}$

※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 (시간급 10,320원) 25년 대비 2.9% 인상

- ◆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(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): 월 환산액: 2,156,880원
- ◆ 주 환산 기준시간 수 48시간(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): 주 환산액: 495,360원

구분	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(교육시간)	직무수행 실습시간			실습지원비	
		일 (8H)	월 (160H)	주 (40H)	월 단위	주 단위
표준형 현장실습	100(0.1)	8	160	40	2,156,880원	495,360원
	0.75(0.25)	6	120	30	1,617,660원	371,520원
자율형 현장실습	0.5(0.5)	4	80	20	1,078,440원	247,680원
	0.45(0.55)	3.6	72	18	970,596원	223,362원
	0.4(0.6)	3.2	64	16	862,752원	198,144원

※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교육시간 비율이 60% 초과하는 실습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실습지원비 산출 시 참고

주 5일 전제 근무시간	1일 6시간 실습	1일 7시간 실습	1일 8시간 실습
주 단위 실습시간 수	36시간	42시간	48시간
월 단위 실습시간 수	157시간	183시간	209시간

★ 참고사항 ★

- 가.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현물(식사, 숙소사, 통근버스 등)로 제공되는 사항은 실습지원비 외의 지원사항으로 실습지원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.
- 나. 교육부 고시에 따른 학생 보장 휴일, (대체)공휴일도 실습지원비 산정 범위에 포함됩니다.
- 다. 실습기간이 주 또는 월 단위로 편성되지 않은 잔여 날의 수(기간)에 대하여는 주 단위 실습지원비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.
- 라. 연장·야간 실습시간에 대한 실습지원비는 「최저임금법」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금액과 연장·야간 실습시간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.
- 마. 실습지원비 회계처리 관련 [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153(2021. 3. 9.) 근거]
 -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지원비는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.
 - 실습기관의 실습지원비 집행 등 비용처리 관련은 국세청(126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바. 실습지원비 지급기준
 - 주 단위 실습지원비: 「최저임금법」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주 단위 실습시간 수,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
 - 월 단위 실습지원비: 「최저임금법」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월 단위 실습시간 수,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